

하남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3289
--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7. 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- 「상업등기법」 제15조 및 「상업등기규칙」 제26조에 따라 ‘법인등기 부등본’은 ‘법인등기사항증명서’로 명칭이 변경(2008년 제정)
- 법령 제·개정 이후 자치법규 상 용어가 법령상 용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법령에 맞게 정비

2. 주요내용

가. 용어 정비

3. 개정조례안: 덧붙임

4. 신 · 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

5. 예산수반 사항: 해당 없음

6. 관계법령 발췌서: 덧붙임

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예고 기간: 2026. 5. 13.~2026. 6. 2.(20일간)

나. 의견 내용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- 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: 해당없음
- 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: 개선의견 없음
- 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: 개선권고

9. 참고사항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: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농업과

하남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법인등기부등본에”를 “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심미적”을 “심미적(審美的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국토교통부 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시의 책무)”를 “(시장의 책무)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지역 화훼산업 활성화 권장)”을 “(지역화훼산업 활성화 권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지역화훼 산업”을 “지역화훼산업”으로, “시 적극적”을 “시 지역화훼산업체에서 생산한 화훼상품 및 식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적극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10%”를 “10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20%”를 “20퍼센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“50%”를 각각 “50퍼센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식품위생농업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 · 성명	식품위생농업과장 나 희 숙
	팀장 직위 · 성명	도시농업팀장 계 태 경
	담당자 성명 · 전화번호	신 영 두 (031-790-5799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“지역화훼산업체”란 법인의 경우에는 <u>법인등기부등본</u> 에,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내에 두고 화훼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.	2. ----- ----- <u>법인등기사항증명서</u> 에----- ----- -----.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“조경”이란 경관을 생태적, 기능적, <u>심미적</u> 으로 조성하기 위해 식물을 이용한 식생 공간을 만들거나 조경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.	4. ----- ----- <u>심미적(審美的)</u> ----- ----- -----.
5. “식재”란 조경면적에 수목(기존수목 및 이식수목을 포함한다)이나 잔디·초화류 등의 식물을 「건축법」 제42조제2항에 따라 <u>국토교통부장관</u> 이 고시한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여 심는 것을 말한다.	5.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국토교통부장관</u> ----- ----- -----.
제3조(<u>시의 책무</u>) (생략)	제3조(<u>시장의 책무</u>)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지역 화훼산업 활성화 권장) ① 시장은 <u>지역화훼 산업</u>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시행 시 <u>적극적</u>으로 권장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 · 허가 시 조경공사에서 지역화훼산업체에서 생산한 화훼상품 및 식재를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다. 1. 식재수량 중 교목은 <u>10%</u> 이상 2. 식재수량 중 관목은 <u>20%</u> 이상 3. 식재수량 중 초화류는 <u>50%</u> 이상 4. 식재수량 중 지피식물은 <u>50%</u> 이상 ③ (생략)	제5조(지역화훼산업 활성화 권장) ① ----- <u>지역화훼산업</u>----- ----- --- <u>시 지역화훼산업체에서 생산한 화훼상품 및 식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적극적</u>---.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<u>10퍼센트</u> --- 2. ----- <u>20퍼센트</u> --- 3. ----- <u>50퍼센트</u> --- 4. ----- <u>50퍼센트</u> --- ③ (현행과 같음)
--	--

관계법령 발췌서

1

「상업등기법」

[시행 2025. 1. 31.] [법률 제20437호, 2024. 9. 20., 일부개정]

- 제15조(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)**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등기기록의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.

2

「상업등기규칙」

[시행 2025. 1. 31.] [대법원규칙 제3170호, 2024. 11. 29., 일부개정]

- 제26조(열람 및 각종증명서의 신청방법)**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(이하 “등기사항증명서”라 한다) 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대리인이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
- ③ 등기기록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,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(미첨부 사유서)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○ 하남시 지역화폐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

나. 비용 발생 요인

○ 해당 없음

2.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2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 발생요인 해당 없음

4. 작성자: 안전환경국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